

2023년 2월 15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브리핑

[의결 안건]	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	김성환 과장(2110-1420)
나. 지상파방송정책과	김성환 과장(2110-1420)
다. 방송지원정책과	신승한 과장(2110-1430)
[보고 안건]	
가. 방송지원정책과	신승한 과장(2110-1430)

## 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

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.

### [의결 안건]

#### 가. (주)마금의 대구문화방송(주)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(주)마금(대구문화방송(주) 주주)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.

#### <방송법 위반사항>

구분	주요내용
위반사항	(주)마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문화방송(주)의 지분을 32.5% 소유
관련규정	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% 이상 취득하는 경우,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※ (주)마금은 동일 사유로 1차 시정명령('20.6.24.), 2차 시정명령('22.4.6.)을 부과 받은 바 있음

#### 나. (주)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(주)삼라((주)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)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.

#### <방송법 위반사항>

구분	주요내용
위반사항	(주)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 (주)울산방송의 주식을 30% 소유
관련규정	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(계열사 합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)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

※ (주)삼라는 동일 사유로 1차 시정명령('21.7.7.), 2차 시정명령('22.4.27.)을 부과 받은 바 있음

#### 다.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- (주)채널에이 -

- '20년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(주)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.
- (주)채널에이는 재승인 조건\*에 따라 '20년도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여야 하나,

#### \* < 관련 재승인 조건 >

-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**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**,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,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

- '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(126,826백만원)이 투자계획(144,009백만원)에 미달(약 88.1% 이행)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,
- '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(17,183백만원)을 '23년 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.

[보고 안건]

가. (주)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

- '20년도 재승인 시 (주)조선방송(이하 'TV조선')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TV조선의 전년도('22년도)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함.
  - 동 이행실적 제출결과는 '23년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.
- 끝.